

의안번호	2217206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8.
추계번호	26F1216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%p 인하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1%p 인하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5,456억원, 2031년 3조 7,348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조 3,456억원(연평균 3조 69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%p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5,456	-35,956	-37,348	-37,348	-37,348	-153,456	-30,691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제1항 (세율)	○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%p 인하 <현행> <table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2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5%</td></tr></table> ⇒ <개정안> <table><tr>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/table>	과세표준 구간	세율	2억원 이하	10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2%	3천억원 초과	25%	과세표준 구간	세율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
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%		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2%		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5%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 구간	세율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 고
1	안 제55조제1항 (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6년 중 통과되어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추계함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7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8년부터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세수효과의 일부가 2027년에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인하의 세수효과는 2024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했으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의 분포는 향후에도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
 - 향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 2025~2029 중기재정전망의 법인세 전망(2025.10월)에 따라 증가하되, 2029년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 - 중간예납액의 총부담세액 대비 비중과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방식 신고 비율이 기업규모별로 상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¹⁾에 속한 법인의 경우, 2024년 세법개정으로 중간예납 가결산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
 - 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액의 총부담세액 대비 비중과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방식 신고 비율이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
1)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 의무화(법인세법§63의2)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범위가 넓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관련 자료의 부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국한해 반영

□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- 법인세 부담 변화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투자·생산 등 기업 행태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, 동 추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□ (2024년 신고 현황) 2024년 법인세 신고법인(2023년 귀속)의 기업규모별·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자료는 다음과 같음

- 2024년 신고(2023년 귀속)기준,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법인은 47.5만개, 전체 과세표준은 349조원 수준
 - － 각 기업규모별·과세표준 구간별 1법인당 과세표준은 0.3억원~1조 213억원 수준

[표 2]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: 2024년 신고기준

과세표준 구간	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조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중소기업	2억원 이하	330,005	19.1	0.6
	2억원~200억원 이하	110,393	100.9	9.1
	200억원~3,000억원 이하	319	12.6	396.3
	3,000억원 초과	1	0.3	3,127.5
중견기업	2억원 이하	802	0.1	0.7
	2억원~200억원 이하	3,021	14.1	46.6
	200억원~3,000억원 이하	414	17.3	418.5
	3,000억원 초과	2	0.8	4,013.5
대기업	2억원 이하	22,272	0.6	0.3
	2억원~200억원 이하	6,733	18.0	26.7
	200억원~3,000억원 이하	948	72.2	761.6
	3,000억원 초과	91	92.9	10,213.1
전 체		475,001	349.0	—

주: 과세표준이 “0”이거나 “음수”인 기업 제외한 수치임
 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산출세액 변화) 법인별 과세표준에 과표구간별 개정 전·후 세율 차이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변화분을 추정하고, 이를 과표구간별 기업 수로 가중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으로 환산

[표 3]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		1법인당 과세표준 (A, 억원)	세율(%)		산출세액 변화분	
			현행(B)	개정안(C)	1법인당 (A×[C-B], 억원)	전체 (억원)
중소 기업	2억원 이하	0.6	10	9	-0.006	-1,974
	2~200억원	9.1	20	19	-0.1	-10,185
	200~3,000억원	396.3	22	21	-4.0	-1,266
	3,000억원 초과	3,127.5	25	24	-31.3	-31
	소계	-	-	-	-	-13,455
중견 기업	2억원 이하	0.7	10	9	-0.008	-6
	2~200억원	46.6	20	19	-0.5	-1,438
	200~3,000억원	418.5	22	21	-4.3	-1,775
	3,000억원 초과	4,013.5	25	24	-40.4	-81
	소계	-	-	-	-	-3,300
대기업	2억원 이하	0.3	10	9	-0.003	-69
	2~200억원	26.7	20	19	-0.3	-1,693
	200~3,000억원	761.6	22	21	-7.9	-7,490
	3,000억원 초과	10,213.1	25	24	-102.9	-9,360
	소계	-	-	-	-	-18,61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(총부담세액 변화)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치에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적용하여 전체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
- 법인세 공제·감면 등 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따른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변화분 추정치에 2024년 신고기준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적용하여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
 - 2024년 신고기준 법인세 산출세액과 총부담세액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은 과표구간별로 0.74~1.01 수준

[표 4]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정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		산출세액 변화분 (A, 억원)	총부담세액/산출세액 (B)	총부담세액 변화분 (A×B, 억원)
중소 기업	2억원 이하	-1,974	0.82	-1,620
	2~200억원	-10,185	0.74	-7,469
	200~3,000억원	-1,266	0.90	-1,143
	3,000억원 초과	-31	1.00	-31
	소계	-13,455	-	-10,263
중견 기업	2억원 이하	-6	1.01	-7
	2~200억원	-1,438	0.84	-1,205
	200~3,000억원	-1,775	0.87	-1,544
	3,000억원 초과	-81	0.97	-78
	소계	-3,300	-	-2,834
대기업	2억원 이하	-69	0.99	-68
	2~200억원	-1,693	0.94	-1,595
	200~3,000억원	-7,490	0.91	-6,842
	3,000억원 초과	-9,360	0.88	-8,224
	소계	-18,611	-	-16,730
합계		-35,367	-	-29,827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□ (향후 총부담세액 변화분 추계) 향후 세수효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치(2025.10.)와 중간예납 비율을 고려하여 추계

- (2028년 이후) 2024년 신고기준 세수효과에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전망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8년 신고(2027년 귀속)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
- 국회예산정책처 2025~2029 중기재정전망의 법인세 전망(2025.10월)
 - 2024년 신고기준 총부담세액 변화분에 연평균 4.6%의 법인세 증가율 전망을 반영하여 2029년까지 세수효과 산정
 - ※연간 4.6% 증가율의 4년 누적 증가율은 약 19.7%
 - 이후의 세수효과는 2029년 신고기준 세수효과와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5] 향후 총부담세액 변화분

(단위: 조원)

신고연도	2024년 (A)	2028년 (A × [1+19.7%])	2029년	2030년	2031년	2032년
귀속연도	2023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2031년
중소기업	-1.03	-1.23	-1.29	-1.29	-1.29	-1.29
중견기업	-0.28	-0.34	-0.35	-0.35	-0.35	-0.35
대기업	-1.67	-2.00	-2.09	-2.09	-2.09	-2.09
계	-2.98	-3.57	-3.73	-3.73	-3.73	-3.73

□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 효과 기간을 반영
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
[표 6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
2027	(중간예납)					
2028		(중간예납)				
2029			(중간예납)			
2030				(중간예납)		
2031					(중간예납)	

- 기업규모별 중간예납 비율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안분
 -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, 중간예납액의 총부담세액 대비 비중과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신고 비율이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
 - ※ 총부담세액 대비 중간예납액 비중: 33.1%(최근 5년 평균)
 -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신고 비중: 21.9%
 - 대기업의 경우, 2024년 세법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중간예납 가결산 방식이 의무화된 점을 반영하여, 향후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신고 비율을 상향 적용
 - ※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 비중: 36.9%(최근 5년 평균)
 - 중간예납액 중 가결산 신고 비중: 21.9% → 58.5%

[표 7] 2027년 귀속분 세수효과의 2027년 중간예납 반영분 산정

과세표준 구간	2027년 귀속분 세수효과 (A, 억원)	중간예납액/ 총부담세액 (B, %)	가결산/ 중간예납 (C, %)	중간예납 반영 세수효과 (D=A×B×C, 억원)
중소기업	-12,286	33.1	21.9	-891
중견기업	-3,392	33.1	21.9	-246
대기업	-20,027	36.9	58.5	-4,319
계	-35,705	-	-	-5,456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1%p 인하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5,456억원, 2031년 3조 7,348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조 3,456억원(연평균 3조 69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%p 인하 (안 제55조 제1항)	-5,456	-35,956	-37,348	-37,348	-37,348	-153,456	-30,691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증가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